

서대문구보건소 일반임기제공무원(의사) 채용시험계획 재공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임기제공무원(의사)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4년 3월 21일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채용직급	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기관	담당직무 내용
의료	일반임기제 지방의무 사무관	1명	2024.05.01.~ 2025.04.30.	서대문구 보건소	▶ 전반적인 보건(교육)사업 ▶ 진료업무(예방접종 등)

※ 임용예정일 : 2024. 5. 1. (임용예정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)

2. 채용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」 (법 률 제19108호, 2022.12.27.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(대통령령 제33531호, 2023.06.13.)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(대통령령 제34100호, 2024.01.05.)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」 (행정안전부예규 제274호, 2023.12.28.)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」 (제816호, 2023.11.15.)

3. 응시자격 요건

- 공통 응시자격요건**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제1항에 의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

※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- 지역·연령·성별 : 18세 이상인 자로 지역, 성별 제한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□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(자격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구 분	응 시 자 격 요 건
일반임기제 지방의무사무관 (의사)	1.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 2. 2년 이상 소요경력이 있는 사람

4. 보수수준

- 연봉액 : 65,346천원
 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- 연봉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□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 4. 1.(월) ~ 4. 3.(수)
【 접수시간 09:00~18:00, 중식시간 12:00~13:00 제외 】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 - ※ 우편접수는 등기만 가능하며,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
- 접수처 : 서대문구보건소 5층 보건위생과(서대문구 연희로 242)
 -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 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(인증기 인증)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 -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□ 시험일정

구 분	일 시	장 소	비 고
(1 차) 서류 전형	2024.04.04.(목) 예정	서대문구보건소	
▶ 서류전형 합격자발	2024.04.05.(금) 예정	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	면접시험일정고
(2 차) 면접 시험	2024.04.09.(화) 예정	서대문구보건소	
▶ 면접시험 합격자발	2024.04.11.(목) 예정	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	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

□ 1차 시험(서류전형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□ 2차 시험(면접시험)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 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 - ※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① 응시원서(첨부1) 1부

- 응시수수료 : 10,000원*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)
 - ※ 수입증지 인증처 : 서대문구청 1층 민원실 2번 창구(330-1150)
 - 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면제 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 제8조 제3항)

② 이력서(첨부2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 기타 증빙자료 제출

③ 자기소개서(첨부3) 1부

④ 직무수행계획서(첨부4) 1부

⑤ 개인정보 제공 · 이용 동의서(첨부5) 1부

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첨부6)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
⑦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 사본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⑧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: 1부 (원본 또는 사본)
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증명서(첨부7)' 추가 제출

⑨ 자격증 사본 : 1부 (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(단, 원본 제출서류의 경우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)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

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(www.sdm.go.kr)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(담당 양종은, ☎ 02-330-896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